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5. 13 선고 2020가단1061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

변 론 종 결 2021. 4. 1.

판 결 선 고 2021. 5. 13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2. 21.부터 2021. 5. 1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12/55 지분에 관하여 2019. 7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을 5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,

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3. 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B은「차용증」이라는 제목으로 「일금: 오천만 원(₩50,000,000)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.

2012. 3. 5. B D」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본인 이름 옆에 서명한 차용증(갑 제1호증, 이하 ‘이 사건 차용증’이라 한다)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.

나.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7. 25. 접수 제15838호로 2019. 7. 22.자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경료해 주었다.

다.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라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12/55 지분과 피고 C 명의의 12/55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5,000,000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56,000,000원인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.

마. 한편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.

[인정근거] 일부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, 충청북도 제천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이상,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

1) 피고 B의 주장 요지

피고 B은, 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원고의 형수에게 숨기기 위해 원고의 형수에게 보여줄 명목으로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이며, ② 이 사건 차용증은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다른 정황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, ③ 설령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필리핀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도박환전상이었고 피고 B은 카지노를 운영하였으므로 결국 위 돈은 피고 B의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자금에 공여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2) 판단

먼저 ① 주장을 보건대,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. 3. 1. 원고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차용증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(갑 제3호증)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,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차용증(갑 제3호증)에 피고 B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피고 B의 그것과 달라 재차 피고 B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바,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의 형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면 이처럼 차용증을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음으로 ② 주장을 보건대,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이 2012. 3. 5. 50,000,000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, 한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2. 3. 5. 당일 50,000,000원의 금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금전거래가 없었던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B이 원고와의 금전관계에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50,000,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은 단순히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과거에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돈의 성질을 밝히고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고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,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끝으로 ③ 주장을 보건대,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필리핀에서 한 카지노 운영이 불법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이 피고 B의 위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,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의 반환 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할 것인바,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2014호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가 2019. 8. 27.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0. 2. 20.경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20. 2. 21.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5. 1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

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2020. 2. 20.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).

3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

1)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9. 7. 22. 이전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50,000,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위 대여금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 C 역시 피고 B이 위 2의 나의 1)항에서 한 것과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하나, 역시 위 2의 나의 2)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

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'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'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,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,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(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).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, 원고에 대한 50,000,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B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다. 사행의사에 대한 판단

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

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런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바,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 C의 주장·증명이 없는데다가 피고들의 관계까지 고려하면, 피고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.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대한 판단

1) 사해행위의 취소

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.

2)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, 그와 같은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다33734 판결,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양도된 부동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 금액은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(대법원

2003. 11. 13.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12/55 지분과 피고 C의 12/55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5,000,000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56,000,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모두 말소된 사실,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12/55 지분의 2020. 11. 20. 당시 시가는 180,199,85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, 한편 피고 B의 위 지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위 2020. 11. 20. 당시의 시가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.

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,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지분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201,000,000원(= 45,000,000원 + 156,000,000원)이고, 피고들 지분의 가액이 동일하므로 이를 2로 나누는 방식으로 피고 B 지분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계산하면 100,500,000원(=201,000,000원 ÷ 2)이 되므로,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의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인 180,199,850원에서 위 피고 B 지분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인 100,500,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,699,850원(= 180,199,850원 - 100,500,000원)이 위 피고 B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액은 79,699,850원이고, 한편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은 50,000,000원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각 금액 중 작은 금액인 5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(별지)

판사 이지혜

목 록

제천시 E 대 182㎡ 끝.

